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16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윤종균 · 송기현 · 안태준
남인순 · 이연희 · 김남희
전용기 · 이광희 · 서미화
허영 · 정을호 · 노종면
김우영 · 이기현 · 소병훈
최혁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동안 약 2,019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

하여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공을 확보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제34조제1항·제8항”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으로,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을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으로,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을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생략)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④ ----- ----- ----- ----- ----- ----- ----- ----- ----- -----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 -----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illegible]